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용어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 (안 제2조제1호)
- 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함.
(안 별지 제3호서식)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의”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규정에 의한 지시”를 “지시”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제29조에 따라----- ----- ----- 관리에-----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조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p> <p>②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③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제4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p>	<p>제4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p>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계상 신청의 예외)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7조(차등보조) ① 제6조제2항에 의한 군·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군·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가 산정·공표하는 당해 회계연도 전전년도의 재정력 지표값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5조(예산계상 신청의 예외) -----

----- 각 호의 하나 -----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차등보조)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

-----.

② 제1항의 ----- 안전행정부 ----- 해당 -----
-----.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

----- 별지 제3호서식 -----
----- 에 따라 -----
-----.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부담 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11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 ① ~ ④ (생략)

⑤ 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사업의 수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

제9조에 따른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제12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시-----

-----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있어서 당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동종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보조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이의 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반환 지시,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보조사업 실적 제출) ① ----

----- 회계연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의 신청 등) ① -----

-----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